

제 198회 영등포구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석면안전관리 및 자원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2016. 12. 5.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석면안전관리 및 자원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1. 경 과

의안 제185호로 2016년 11월 15일 허홍석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정함.

3. 주요내용

- 가. 구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나.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 및 결과
공개(안 제4조, 안 제7조)
- 다. 석면건축물의 기준 및 안전관리(안 제5조 ~ 제6조)

- 라.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슬레이트 처리,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 및 처리 등 지원(안 제8조 ~ 제10조)
- 마.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해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안 제11조)
- 바. 건축물의 석면 해체작업을 할 경우 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안 제12조)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제23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등), 제25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제32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33조(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제37조(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특례),
- 「석면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24조(석면건축자재), 제28조(석면건축물의 관리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2016. 11. 8. ~ 11. 14.)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석면안전관리법」을 근거로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국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조례안임.

- 조례안은 13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주요 내용을 보면
 - 1) 구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 조사를 의무화하고 그 조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 2)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제거 등은 전문가로 하여금 해체·제거하도록 함.

 - 3) 슬레이트 시설물 등의 사용실태 조사와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에 대한 처리기준과 지원 사항을 규정함.

- 4) 또한 이에 대한 해체·제거·처리 등에 드는 비용과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육성 및 연구, 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5) 석면해체 작업시 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을 두어 안전관리 지도와 계몽을 하도록 함.
- 석면은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발암물질로써 안전하고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는 고위험 물질임.
 - 따라서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 련 법 령

■ 『석면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石綿)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矽酸鹽) 광물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2. "석면 함유제품"이란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으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면 함유가능물질을 가공·변형한 제품을 제외한 제품을 말한다.
3. "개발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승인·허가·면허 등(신고에 대한 수리를 포함하며, 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으로서 석면이 비산(飛散)되거나 비산될 가능성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 개발사업
 - 나.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다. 그 밖에 건축물의 건축, 토석채취 등에 따라 석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사업
4. "승인기관"이란 개발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건축물석면지도"란 건축물의 천장, 바닥, 벽면, 배관 및 담장 등에 대하여 석면 함유물질의 위치, 면적 및 상태 등을 표시하여 나타낸 지도를 말한다.
6. "석면건축자재"란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건축자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국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 및 국민건강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21조(건축물석면조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학교등의 건축물을 관리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건축물소유자"라 한다]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건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통보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이하 "건축물석면조사"라 한다)를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법」 제65조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건축물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라 석면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건축물

3.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을 함유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건축물

② 건축물석면조사의 항목, 조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③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기록 및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등)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본인,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에서 1명 이상을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이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이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기준, 지정 및 변경 신고기한, 신고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의 사용 실태 및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1동의 건물 중 일부분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1.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에 속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의료시설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노인 및 어린이 시설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은 연면적이 4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32조(석면건축물의 기준)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석면건축물(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제33조(석면건축물 관리기준) ① [법 제22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석면건축물을 관리할 것

2.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에 대하여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전기공사 등 건축물에 대한 유지·보수공사를 실시할 때에는 미리 공사 관계자에게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지도(이하 "건축물석면지도"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공사 관계자가 석면건축자재 등을 훼손하여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감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이 [제29조](#) 각 호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또는 석면건축자재의 철거 등으로 [제32조](#)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1. 건축물**석면**지도
2.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3. **석면**건축자재의 철거·교체 증명자료(**석면**건축자재를 철거하거나 교체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또는 불승인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특례) ①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른 슬레이트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이하 "슬레이트 처리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주택의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작업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가능한 시·군·구 단위 또는 읍·면·동·리 단위 등으로 묶어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주택의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와 관련한 계획수립, 계약, 관리·감독 등에 관한 업무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 슬레이트 처리등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슬레이트 처리등을 하려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라 **석면**조사를 실시할 것

2. 슬레이트 처리등을 하려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3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3의 슬레이트 처리등의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할 것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슬레이트 처리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슬레이트 처리등

을 할 수 있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슬레이트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하이고 소유주가 직접 슬레이트를 해체·제거하는 경우
2.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방파제나 다리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한다)에서 슬레이트를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
3. 슬레이트를 수집·운반할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산간오지 등에서 슬레이트를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파손된 슬레이트를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50조(보고 및 자료 제출의 관계인)법 제4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3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비용을 지원 하는 자
2.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로부터 업무를 위탁 받은 관계 전문기관
3. 석면등을 수입,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
4.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수입, 생산 또는 유통하는 자
5.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변형하는 자
6. 관리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자
7. 제29조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8. 건축물석면조사를 하는 석면조사기관
9.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10. 석면안전관리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11. 슬레이트 처리등을 하는 자
12. 석면해체·제거업자
13. 석면해체작업감리인

14. 석면환경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15. [제40조](#)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
16. [제49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위탁 받은 자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석면건축자재의 종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석면건축자재란 다음 각 호의 건축자재 중 [제2조](#) 각 호의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건축자재를 말한다.

1. 지붕재
2. 천장재
3. 벽체재료
4. 바닥재
5. 단열재
6. 보온재
7. 분무재
8. 내화피복재
9. 칸막이
10. 배관재(개스킷, 패킹, 실링 등)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자재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재

제24조(석면건축자재)영 제32조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란 [제3조](#)제7호 또는 제8호의 건축자재를 말한다

제28조(석면건축물의 관리기준)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영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석면의 위해성 정도를 고려하여 보수, 밀봉(密封), 구역 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영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 및 조치 내용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 ① 기관석면조사 대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석면해체·제거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이 인력·장비 등에서 석면해체·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스스로 석면을 해체·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1.7.25.>

②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는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25.>

③ 석면해체·제거업자(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을 말한다. 이하 제38조의5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1.7.25.>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⑤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3항에 따른 신고 절차, 제4항에 따른 평가 기준·방법 및 공표 방법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⑥ 석면해체·제거업자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2.6.]